

● 제27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본부)
검 토 보 고 서

2016. 12.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445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16. 10. 31.
- 다. 회부일 : 2016. 11. 03.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복지본부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조 9,478억 8천 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144억 4천 2백만원 (7.8%)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예산	2016년도		증감(비율)	비고
		추경예산	본예산		
합계	2,802,822	2,947,888	2,733,446	214,442(7.8%)	
세외					
경상적	12,302	13,111	13,111	0	
수입					
임시적	23,512	14,218	14,218	0	
지방교부세	169	200	-	200(순증)	
국고보조금 등	2,335,248	2,376,299	2,269,876	106,423(4.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1,590	544,060	436,241	107,819(24.7%)	

나. 세출예산

- 복지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4조 9,452억 7천 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99억 9백만원(7.4%)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5년	2016년			비고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합 계	4,461,346	4,945,275	4,605,366	339,909	
행정운영경비	679	498	498	-	
재 무 활 동	436,351	530,431	422,613	107,818	
사 업 비	4,024,317	4,414,345	4,182,255	232,09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총괄 검토

- 2016회계연도 제1차 복지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예산집행 실태와 중앙정부와의 국비 매칭 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및 시비 편성액을 추가하는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집행계획을 재점검하며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복지본부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4조9,452억7천5백만원)과 비교하여 30개 사업 3,408억 6천 9백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의 0.02 %인 1개 사업 9억 6천 만원을 감액하였음.

〈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감 액	%	증 액	%
계	4,945,275	4,605,366	△960	0.02%	340,869	6.9%
사 업 예 산	4,414,345	4,182,255	△960	0.02%	233,050	5.6%
행정운영경비	498	498	-		-	
재 무 활 동	530,431	422,613	-		107,818	25.5%

※ 총 31개 사업 중 339,909백만원 (국비 106,423백만원, 시비 233,486백만원)

- 증액사업 : 30개 사업 중 340,869백만원 (국비 106,921백만원, 시비 233,948백만원)

- 감액사업 : 1개 사업 감 960백만원 (국비 498백만원, 시비 462백만원)

-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를 보면 총 4조 9,452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된 바,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55억 4천만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15억 9천 7백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음.

2 세입 추정안 검토

- 복지본부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조 9,478억 8천 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144억 4천 2백만원(7.8%)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예산	2016년도		증감(비율)	비고
		추경예산	본예산		
합 계	2,802,822	2,947,888	2,733,446	214,442(7.8%)	
세외					
경상적	12,302	13,111	13,111	0	
수입					
임시적	23,512	14,218	14,218	0	
지방교부세	169	200	-	200(순증)	
국고보조금 등	2,335,248	2,376,299	2,269,876	106,423(4.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1,590	544,060	436,241	107,819(24.7%)	

- 지방교부세 증액은 「폭염관리대책비」로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증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에서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분(국비50:국비50)을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입된 예산임.

3 세출 추정안 검토

가. 추정안 중 증액 편성분에 대한 검토

1) 총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매칭사업 중 2015년 미교부 국비 이월액 및 2016년

사업비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거하여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9억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1억 6천만원)”, “통합사례관리 지원(5백만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4억 5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269억원)”, “의료급여사업(1,802억)”, “긴급복지지원사업(2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1,078억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13억8천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18억2천만원)” 등 총 30개 사업에 3,408억 6천 9백만원(국비 1,069억 2천 1백원, 시비 2,339억 4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부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01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합 계	(x2,376,299) 4,945,275	(x2,269,876) 4,605,366	(x106,423) 339,909
정책사업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x20,388) 225,719	(x18,227) 223,166	(x2,161) 2,55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x10,064) 15,540	(x8,373) 13,629	(x1,691) 1,911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x1,096) 1,597	(x953) 1,430	(x143) 168
통합사례관리 지원	(x1,981) 3,085	(x1,978) 3,080	(x3) 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x7,193) 67,154	(x6,923) 66,749	(x270) 405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 (민간주도형)	(x20) 20	-	(x20) 20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x21)	-	(x21)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31		3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x14)	-	(x14)
	14		14
정책사업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x926,341) 1,712,796	(x833,782) 1,502,959	(x92,559) 209,837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x413,841) 623,745	(x395,500) 596,845	(x18,341) 26,900
의료급여사업	(x488,888) 1,015,190	(x416,469) 834,953	(x72,419) 180,237
긴급복지지원사업	(x11,705) 17,558	(x9,905) 14,858	(x1,800) 2,7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524,288	416,469	107,819
정책사업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x1,114,660) 1,593,752	(x1,113,742) 1,591,711	(x918) 2,041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x1,996) 10,906	(x1,936) 10,846	(x59) 59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x2,604) 10,657	(x2,388) 10,441	(x216) 216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x643) 13,017	11,452	(x643) 1,566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x10,312) 18,788	(x10,312) 18,588	(x-) 200
정책사업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x31,672) 107,634	(x30,591) 105,834	(x1,081) 1,800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x31,087) 68,450	(x30,591) 67,235	(x496) 1,215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x585) 2,755	(x-) 2,170	(x585) 585
정책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x47,752) 182,887	(x46,140) 179,664	(x1,612) 3,2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x1,696) 3,404	(x786) 1,583	(x910) 1,820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x63) 318	(x55) 301	(x8) 1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x2,085) 4,182	(x1,392) 2,796	(x693) 1,386
정책사업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x180,266)	(x173,540)	(x6,726)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465,304	453,645	11,659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x8,250) 16,500	(x7,860) 16,330	(x390) 170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x420) 5,780	(x399) 5,728	(x21) 5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x83,688) 168,654	(x78,992) 160,454	(x4,697) 8,200
장애수당	(x14,886) 40,877	(x13,888) 38,880	(x998) 1,997
장애인의료비 지원	(x2,628) 5,256	(x2,077) 4,154	(x551) 1,102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x479) 1,159	(x410) 1,020	(x69) 139
정책사업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x5,535) 50,304	(x4,728) 49,496	(x808) 808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x1,380) 3,185	(x720) 2,525	(x660) 660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x148) 591	(x-) 443	(x148) 148
정책사업 :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x49,684) 75,949	(x49,126) 75,780	(x558) 168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x4,173) 6,662	(x4,029) 6,445	(x145) 217
내일키움통장	(x911) 1,337	(x-) 425	(x911) 911
희망키움통장 I·II	(x6,708) 12,189	(x7,206) 13,149	(x△498) △960

2) 2016회계연도 성립전 예산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 집행부는 국비매칭사업중 국고보조금 증액 변동에 따라 시비매칭에 따른 추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추경편성시까지 집행시기를 미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립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하였음.
- 2015회계연도까지는 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간주처

리 제도¹⁾를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사용한 바, 별도의 추경 없이 예산변경 사용이 가능했음.

-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과정에서 간주처리 조항 삭제됨에 따라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추경으로 편성한 후에 집행하도록 변경되었음.
- 집행부는 국고보조금 증액변동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이 필요한 사업 중에 추경까지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성립전 예산사용제도’를 활용하였음.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집행부가 추경 성립전 사용제도에 따라 집행한 예산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의료급여 사업을 포함하여 15개 사업이며,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폭염대책 홍보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이를 시비로 편성한 내용임.
- 15개 사업의 기정예산(9,904억 6천 7백만원) 대비 7.8% 증액된 774억 9천9백만원의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 포함)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했음.

1) 간주처리 : 예산총칙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운영하는 방식

〈표〉 2016 회계연도 성립전예산 처리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당초예산(A)			성립전 예산(B)			변경 후(A+B)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합계	990,467	479,602	510,865	79,262	79,062	200	1,069,729	558,664	511,06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629	8,373	5,256	1,471	1,471		15,100	9,844	5,256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430	953	477	92	92		1,522	1,045	477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	-	-	20	20		20	20	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	-	-	14	14		14	14	0
의료급여	834,953	416,469	418,484	72,419	72,419		907,372	488,888	418,484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0,846	1,936	8,910	59	59		10,905	1,995	8,91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0,441	2,388	8,053	216	216		10,657	2,604	8,053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1,452	-	11,452	643	643		12,095	643	11,452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8,588	10,312	8,276	200		200	18,788	10,312	8,476
어르신사회활동지원	67,235	30,591	36,644	1,215	1,215		68,450	31,806	36,644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2,170	-	2,170	585	585		2,755	585	2,170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6,330	7,860	8,470	609	609		16,939	8,469	8,470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2,525	720	1,805	660	660		3,185	1,380	1,805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443	-	443	148	148		591	148	443
내일키움통장	425	-	425	911	911		1,336	911	425

※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 국민안전처에서 폭염대책홍보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비로 편성

- 행정자치부는 공문을 통하여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경 성립전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조기집행 한시적 운영 - 행자부 공문(2.12일, 9.2일)

- ▶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가능 ('16.1.1 ~6.30일, '16. 9.2 ~12.31일)
-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집행부의 위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 사용 제도’가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음²⁾.

○ 집행부에 따르면,

- 지방재정법 상의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라 함은 ‘국가의 사업비 전액 부담여부가 아닌, 사용결정액수 전액의 교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임.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비율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에 관하여도 국가로부터 용도를 지정받아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선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법률고문 의견에 따르면

2) 서울특별시의회 법률고문의 의견회신을 보면 적법설 1명, 위법설 2명으로 위법설이 다수 의견임.

- 지방재정법(제45조)이 ‘소요 전액의 국비가 교부된 것’이어야 한다고 요건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원칙이고, 성립전 사용제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같은 조항의 제2호에서 “재난 구호 및 복구” 등 예외적으로 긴급한 예산 사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지방재정법 상의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전액이 국비로 교부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용도가 정해진 국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제45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일부가 지방비 부담 사업을 포함하여 해석할 경우, 선집행된 경비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지방의회가 삭감할 수 없고 계상된 예산대로 의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³⁾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사실상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일부 지방비 부담 사업을 무분별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것임.

- 두 의견을 종합해보면, 집행부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성립전 사용 예산제도를 활용한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점 없다고 하겠으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는 확장 해석에 기초한 위법한 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위법성의 논란은 성립전 사용예산분을 포함한 추경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치유된다고 볼 수 있으나, 무분별한 성립전 사용예산제도 활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성립전 사용예산제도를 지양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관계 속에서 적법성을

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확보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하여 탄력성 있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추경안 중 증액 편성분에 대한 검토

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하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은 성장기의 감각적·정신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사업 개요

- ①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② 사업내용
 - 대 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 지원액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월 220천원 바우처 지급
 -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 음악·미술, 행동·놀이치료 등
- ③ 추진현황 및 계획(16. 8월말 기준)
 - 현황 : 연 67,568명(월 평균 8,446명) 이용
 - 계획 : 향후 4개월 간(9~12월) 약 33,700명에게 지원 예정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에 대한 감액 내시를 세 차례 통보(16.4.15, 16.7.19, 16.10.14)하여 기정 예산 169억 3천 9백만원을 4억 3천9백만원 삭감하여 165억원(국비 82억 5천만원, 시비 82억 5천만원)으로 최종 내시하였음.

-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소요예산 자료를 보면, 기정예산 163억 3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165억원을 추경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8,250,092) 16,500,184	(x7,860,278) 16,329,870	(x389,814) 170,314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x8,250,092) 16,500,184	(x7,860,278) 16,329,870	(x389,814) 170,314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 (국비 389,814천원, 시비 △219,500천원)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국시비 매칭 사업의 예산수치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서울시가 2016회계연도 편성시에 보건복지부가 확정내시한 바에 따라 기정예산(169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 회계상의 작성상 오류로 인하여 확정내시보다 적은 163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집행부는 해명함.

○ 집행부는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 소요예산이 감추경되었으나, 예산 집행상 서비스 비용 지급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밝히고 있음.

하지만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과 같이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안은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예산의 회계상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이나 예산변경제도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단년도 예산원칙을 감안한 과학적·치밀한 예산 집행 필요

가. 부적절한 성립전 예산 사용 사업 설정

○ 성립전 예산 사용 사업 중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정예산(104억 4천만원) 대비 2.1% 증액(2억 1천만원) 106억 5천 7백만원이 추경안을 편성되었음.

<표>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2016년 11월 15일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377	2,535	8,842	22.3%	77.7%

- 국고보조금 증액(2억1천6백만원) 편성되었으나, 어르신복지시설 증축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2017회계연도로 상당한 예산액이 이월될 것으로 보임.
-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는 추경전까지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상당한 불용률(11월 15일 기준)을 보이고 있는 같은 사업을 성립전 예산 사용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집행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 바, 해당 사업들에 대하여 연말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앞으로 예산편성상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표> 2016회계연도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16.11.15기준)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의사상자 지원	157	64	94	59.6%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871	426	445	51.1%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063	402	662	62.2%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복지시설 방향설정 연구용역	300		300	1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용역	80		80	100.0%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650	275	375	57.7%
복지본부 워크숍	13	6	6	50.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377	2,535	8,842	77.7%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397	177	220	55.4%
어르신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100		100	100.0%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	14,178	5,390	8,788	62.0%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700		700	100.0%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14		14	100.0%
어울림플라자(가칭) 리모델링 사업	996	232	763	76.7%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10	3	7	66.3%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및 개인예산제연구용역	150		150	100.0%
장애인 관련 TF팀 운영	100	48	52	51.6%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796	871	1,925	68.9%
여성장애인 교육	41	16	24	60.0%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7	3	4	61.1%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2,621	4	2,617	99.8%

5 국시비 매칭사업의 문제점 및 상위법 제·개정 필요

○ 금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편성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시비 매칭분을 추가 편

성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음.

- 이러한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대부분의 국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이라고 하겠음.
-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되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추어서 수동적·피동적 자세로 업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의 가장 문제점은 사무처리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중첩적이며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예산의 사용부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예산을 획득하여 추진한 사업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인 바, 이로 인하여 체계적인 낭비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사무배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고,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하며,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하도록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법률적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있음.
-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위임한 사무 및 단체위임한 사무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재배분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